

#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23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기덕, 박승진,  
박철성, 봉양순, 왕정순,  
이상훈, 이용균, 이원형  
의원(9명)

찬 성 자: 김규남 의원(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자 함
- 시장의 가로수 조성 심의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, 식재기준에 있어 ‘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’(별표 3) 및 ‘도로별 가로수 식재 크기’(별표 4)를 조례상 세분화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가로수 도로별 식재 기준 신설(안 제7조의2 신설)
- 나.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(안 제7조의3제3호 신설)
- 다. 별표 3에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 신설(안 별표 3)
- 라. 별표 4에 도로별 가로수 식재 크기 신설(안 별표 4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7조의2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을”을 “사항에 대하여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그 밖에 가로수 조성·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의2(가로수의 도로별 식재 기준)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,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,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에 따른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.

②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 기준을 마련하여 결정한다.

③ 가로수는 별표 4의 도로별 가로수 조정 규격에 따른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.

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표3과”를 “별표 5와”로 한다.

별표 3 중 원인자부담금을 삭제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4 및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[별표 3]

도로별 식재 조성 기준(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)

구 분	조성 기준	비 고
① 광로이며 보도폭 10미터 이상	2~3열 다층구조	·현지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음
② 대로이며 보도폭 7미터 이상 ~ 10미터 미만	2열 다층구조	
③ 중로이며 보도폭 4미터 이상 ~ 7미터 미만	1열 다층구조	
④ 소로이며 보도폭 4미터 미만	1열 단층구조	

[별표 4]

도로별 가로수 식재 크기(제7조의2제3항 관련)

구 분	식재 크기	비 고
① 광로이며 보도폭 10미터 이상	가슴높이 지름 12센타미터 이상 근원 지름 15센타미터 이상	·현지 여건 및 식재방법, 수종 등에 따라 식재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
② 대로이며 보도폭 7미터 이상 ~ 10미터 미만	가슴높이 지름 12센타미터 이상 근원 지름 15센타미터 이상	
③ 중로이며 보도폭 3미터 이상 ~ 7미터 미만	가슴높이 지름 10센타미터 이상 근원 지름 12센타미터 이상	·아름다운 경관 조성 및 교통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목도 식재할 수 있음
④ 소로이며 보도폭 3미터 미만	가슴높이 지름 10센타미터 이상 근원 지름 12센타미터 이상	



<신 설>

제20조(원인자부담금) ①·② (생략)

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.

1. ~ 3. (생략)

④ (생략)

3. 그 밖에 가로수 조성·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0조(원인자부담금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별표 5와 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#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2(가로수의 도로별 식재 기준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의2(가로수의 도로별 식재 기준)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목의 종류, 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  
e-mail : kjh0123@seoul.go.kr